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5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1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0,491,73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1. 10. 21. ○○○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제주지방법원 F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취득하고, 2021. 10. 22. 신고가액 3,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50,491,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B조합의 복지사업 또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350,491,730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2.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복지 사업,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육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B조합의 복지사업 또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B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즉, 복지사업(2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4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 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과 문화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정 요건 하에 B조합에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서민·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B조합에 대하여 그 취득 부동산이 B조합의 고유의 신용업무 혹은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에 사용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해당 조합원들의 실질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B조합이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거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단독주택 용도로 신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 12. 6.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 2022. 2. 14. 주식회사 G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22. 2. 14.부터 2022. 9.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A조합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이하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1개동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스크린 골프장과 족구장 용도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 토지에 족구장을 설치하며, 나머지 건물의 경우 각 동마다 거실과 방, 부엌 등이 구비되어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형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공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거주시설은 교육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 건축신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교육시설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연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고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며 월 2회 조합원 연수를 실시하고, 연 2회 임직원 연수를 실시하며, 우수 조합원이나 임직원의 하계 휴양소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연수원 시설 운영 사업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중 1개동이 철거된 뒤 신축된 철골구조의 건물은 외관만 완성된 정도이고, 나머지 동은 모두 단독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채로 건축물 내에 가구 등 물품이 구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현재까지 원고 주장의 목적에 따른 사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판사 강○○

판사 이○○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각 목 생략)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끝.